

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”

❗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'을 실시해야 합니다.

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
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”



고용노동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

❗ 교육 대상
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,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)
- 출장,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

❗ 교육 방법

- 사업주 또는 인사(노무) 담당자가 직접 실시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(고용노동부 지정)
- 전문 강사가 실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)

❗ 교육 자료

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참조
-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
-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교육용 교재
-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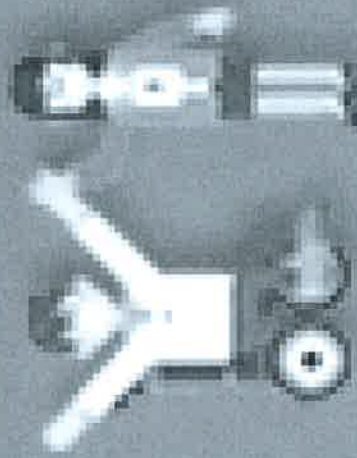
❗ 교육 증빙

-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(양식은 공단 자료실에서 제공)
과태료 부과 (300만원 이하)
- 교육을 미 실시 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(3년)를 위반한 경우

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www.kead.or.kr) 1588-1519



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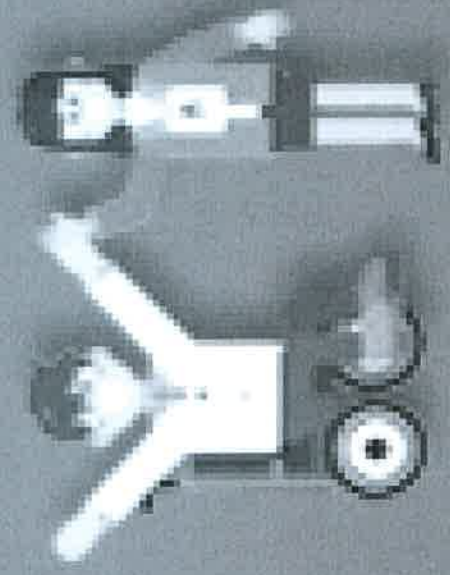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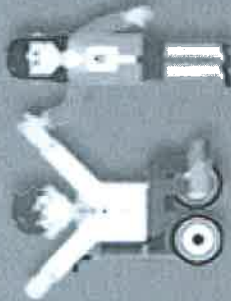
5월 29일부터
직장 내 장애이 인식개선
교육 의무가 강화됩니다

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미이행 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부과



5월 29일부터
직장 내 장애이 인식개선
교육 의무가 강화됩니다
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
미이행 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부과





5월 29일부터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됩니다

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, 미이행 시 과태료(300만원 이하) 부과



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

한글공공언어교육원

한글공공언어교육원

한글공공언어교육원

2018년 5월 29일부터
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

모든 사업주는 연 1회, 1시간 이상

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」을 실시해야 합니다.

"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
장애인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
장애인이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
도ukung 계기가 될 것입니다."

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.kead.or.kr

(대표번호 : 1588-1519)



고용노동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

1) 교육 대상
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

[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, 파견근로자도 시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실시]

- 출장,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

2) 교육 방법

- 사업주 또는 인사(노무) 담당자가 직접 실시
-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[고용노동부 지정]
- 전문 강사가 실시[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]

3) 교육 자료 *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참조

-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
-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교육용 교재
-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

4) 교육 증명

-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(양식은 공단 자료실에서 제공)

5) 과태료 부과 (300만원 이하)

- 교육을 미 실시 하거나 자료 보관 의무(3년)를 위반한 경우

